

대전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가단1135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9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 10. 접수 제18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B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근저당권말소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D, I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근저당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 강길연

별지